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6-6022호(2026.09.03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21일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변경내용		근거법령 및 변경 사유
			당 초	변 경	
태주산업개발(주) (권주영)	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 문로 537, 2층 201호	건축공사업 (16-0894)	영업정지 (’26.09.07.~ ’27.01.06.)	영업정지 (’26.09.07.~ ’26.12.22.)	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(대표자의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)